

주거급여수급자 지원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		
사업비 (당해년도)	495,206,800천원	(국비)337,641,000천원	(시비)157,565,8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국비)67,528,200천원	(기타)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주택건축본부	주택정책과	김정호 2133-7010	박준영 2133-7025	이지연 2133-7023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0예산액 (A)	2021예산액 (B)	증감 (B-A)	
				(B-A)*100/A
계	(x312,105,324) 457,754,469	(x337,641,000) 495,206,800	(x25,535,676) 37,452,331	(x8) 8
자치단체경상보조 금	(x312,105,324) 457,754,469	(x337,641,000) 495,206,800	(x25,535,676) 37,452,331	(x8) 8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1년 예산내역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167천원(월평균지원금)×28만가구×12개월×88%(국비60%,시비28%) = 495,206,800천원 495,206,800,000원

과목구분	2021년 예산내역
------	------------

3 사업설명

□ 사업목적

-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(주거급여법 제1조)

□ 사업근거

- 주거급여법
-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(국토부고시 제2018-309호)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□ 사업내용

- 지원대상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% 이하인 가구
 - 소득인정액 :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 환산액
 - 기준 중위소득
 -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
- 사업기간 : 2021. 1.~12. (계속)
- 급여 종류 및 지원금액
 - 임차급여
 -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, 가구원 수 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
 - 수선유지급여
 -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 규모, 소득 인정액, 수선유지비 소요액,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(경, 중, 대)를 실시
- 총사업비 : 562,735,000천원 (본예산 : 국시비 495,206,800천원)
 - 국비337,641,000, 시비 157,565,800, 구비 67,528,200(예산 외)
 - 재원부담(매칭) 비율: 국비 60%, 시비 28%, 구비 12%

□ 추진경위

- '14. 1.24. 주거급여법 제정
- '14. 8. 6. 주거급여법시행령 제정

- `14.12.30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, 맞춤형 급여로 전환
(주거급여 별도규정)
- `15. 7. 1. 개편 주거급여 국토부로 이관하여 실시
- `15. 5.28.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
(국토부고시 제2015-338호)
- `15. 7. 1. 개편 주거급여 실시
- `18. 6. 1.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개정
(국토부고시 제2018-309호)
- `18.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
2021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495,206,800	
주거급여 사업계획 수립	2021.01~2021.12		사업계획 수립
보조금 신청 및 집행	2021.01~2021.12	495,206,800	매월 교부금 신청 및 교부, 집행
사업 정산	2021.01~2021.01		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

4 사업 효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2018년도	○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181,245가구, 257,902명 지원('18.12월 기준)
2019년도	○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207,505가구, 290,544명 지원('19.12월 기준)
2020년도	○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239,136가구, 334,885명 지원('20. 9월 기준)

향후 기대효과

- 수급자의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, 주거 상향 이동 및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 가능

○ 자가 수급자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는 기존 5개 부처에서 시행하던 유사 주택개량사업을 국토교통부로 통합, 일원화하여 수급자에 대한 효과적인 주택 개량 및 실질적 주거 보장을 강화

- 기존 주택 개량사업

-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(산업부), 주택 옥내급수관 개량(환경부),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량(복지부),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(환경부), 지역공동체일자리 집수리 사업(행자부)
- → 수선유지급여(국토부)로 일원화

5

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7	(x150,000,000) 218,951,016	(x-)0	(x-)427,139	(x150,000,000) 219,378,155	(x148,893,044) 218,059,704	(x-)0	(x1,106,956) 1,318,451
2018	(x186,585,619) 273,658,908	(x-)0	(x-)0	(x186,585,619) 273,658,908	(x172,986,456) 253,713,470	(x-)0	(x13,599,163) 19,945,438
2019	(x264,501,451) 387,935,462	(x-)0	(x-)0	(x264,501,451) 387,935,462	(x227,897,640) 334,249,869	(x-)0	(x36,603,811) 53,685,593